

제8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법무관 심 규 현

〈목 차〉

- | | |
|---|---|
| I. 회의 개요 | 2. 조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및
원격 조정(Remote Mediation) |
| II. 주요내용 | 3. 중재에서의 원격 심리(Remote
Hearings): 절차 지침 및 모범 사례 |
| 1.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MAL)
개정안 | IV. 향후 논의 방향 |
| 2. UNCITRAL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 개정안 | 1. 전자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
| III. 분쟁해결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원격
심리절차, 원격 조정 절차에 관한 콜로키엄 | 2. 분쟁해결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등에 관한 콜로키엄 관련 |
| 1. 중재인과 인공지능(AI) 활용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 | V. 관찰 및 평가 |

I. 회의 개요

제8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2실무작업반 회의가 2025. 2. 16.부터 2. 20.까지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총 40개 위원국을 비롯하여 15개 국가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관련 기구 소속 옵서버들이 참석하여 상사 중재 규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전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Electronic Arbitral Awards)’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었다. 해당 주제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이 일본,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과 함께 ‘전자중재 판정문 및 전자통지 제도의 활용방안’을 제2실무작업반에 공식 제안함에 따라 개시된 것이다. 아울러 본 회의와 병행하여 분쟁 해결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원격 심리 절차, 원격 조정 절차에 관한 콜로

키움이 실시되어 기술 발전에 따른 중재 절차의 현대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II. 주요내용

1.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MAL) 개정안

1) 취소(Set Aside) 단계에서의 비차별 원칙 도입

실무작업반은 수정된 제35조(승인·집행)에 더하여 제34조(중재판정 불복의 소)에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판정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제34조 제2-1항(기존 제2항 및 제3항 사이에 신설)

(2-1) An award in electronic form shall not be set aside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일본은 제안된 문구의 추가가 제35조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종이 기반 판정과 전자적 형식 판정 간의 비차별 원칙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문구의 추가를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는 제34조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배타적으로 열거(exclusive grounds)하고 있는 조항임을 지적하였다. 이미 열거된 사유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전자적 형식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부정적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조문의 논리적 구조를 해치고 오히려 다른 사유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 역시 모델법 제31조 제5항에 이미 “중재판정부가 전자적 형식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모델법 스스로 허용한 형식을 이유로 판정을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self-evident)이며, 제34조와 제35조는 목적과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문구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캐나다는 단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판정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

히 하고자 한다면, 모델법 본문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해설노트(Explanatory Note)에서 관련 설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국 제34조와 제35조는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제34조의 배타적 열거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수 국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며, 제34조에 제안된 문구를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제34조에 제안된 문구의 추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된 모델법(MAL) 제35조 제3항에 포함된 solely(오로지)라는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지난 제82차 회의에서 승인된 제35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L 제35조 제3항
(3) An award in electronic form shall not be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u>solely</u> on th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카메룬 등 일부 국가는 “solely”라는 표현이 전자적 형식이 다른 사유와 결합할 경우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해당 문구가 불명확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solely”라는 용어가 비차별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전자적 형식이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의 유일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용어는 이미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MLEC)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바레인과 캐나다는 “solely”라는 용어를 유지할 경우 그 의미와 목적을 해설노트(Explanatory Note)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에 대하여 AAA/ICDR은 모델법 본문 자체가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핵심 사항에 관한 해석을 해설노트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 외에도 “solely”를 “whether solely or otherwise”로 대체하는 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합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관련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의장은 “solely”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어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모델법(MAL) 제35조 제1항의 “in writing”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문언은 다음과 같다.

MAL 제35조 제1항
(1) An arbitral award,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made, shall be recognized as binding and, upon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competent court, shall be enforc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of article 36.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in writing”이 종이 문서(서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모델법 개정 당시 제7조 옵션 I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표현을 삭제할 경우 구두 신청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과 바레인 등 제7조 옵션 I의 “in writing” 정의는 해당 옵션이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지적하였으며, 뉴욕협약에는 “in writing”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한편 멕시코와 스페인은 “in writing”을 유지할 경우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이를 삭제하면 모델법의 목적에 맞게 문서의 형태에 관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관련 논의가 지속되자 의장(Andrés Jana)은 아직 “in writing”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정리하였다. 이후 단어를 유지하되 “in writing”에 전자적 형식이 포함된다는 점을 보고서(Travaux)에 명시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며, 작업반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in writing”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가 최종 정리되었다.

2) 전자적 중재 통지 관련 논의

실무작업반은 위원회(Commission)의 위임에 따라 중재 개시 통지 등 절차 전반에 걸친 전자적 통지(송달)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지난 제82차 회의에서 사무국에 초안 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사무국은 모델법(MAL) 제3조에 (1 bis)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제3조 제(1 bis)항
(1 bi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delivery” includes transmiss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ncluding for notices, to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or authorized by the arbitral tribunal[, or in the absence of such designation or authorization]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is regularly monitored and actively used by the addressee][to an electronic address regularly us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eir prior dealings.]

이에 대하여 미국은 송달 시 수령을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재 통지(notices)는 통상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송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 통지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전자주소를 송달처로 정할 수 없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이 수정한 MAL 제3조 제(1 bis)항
(1 bis) For purposes of paragraph 1, delivery include transmiss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provides a record of sending to an electronic address (1) designated by the addressee for this purpose, or (2) in the case of communications other than notices of arbitration , as authorized by the tribunal.

의장은 미국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문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삭제하였던 “specifically”라는 단어를 다시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ALARB는 장기계약 등에서는 상설 중재판정부 또는 사전 지정된 중재판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실무적 특성을 지적하며, 중재 통지 역시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전자주소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사무국이 제시한 개정안 중 대괄호로 표시된 마지막 옵션인 “to an electronic address regularly us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eir prior dealings(당사자 간

과거 거래에서 통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된 전자주소로의 송달)” 문구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ALARB, 프랑스, 브라질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이러한 규칙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며, 적법 절차(due process) 요건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재 통지의 수령은 절차를 개시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추정하는 규칙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위스는 사무국의 개정안을 모델법 제3조 제1항 (a)호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스위스 측은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제3조의 기존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규정과 병렬적으로 전자 송달 방식을 추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조사 이후에도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리적 송달 규정이 자연스럽게 보충적 규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위스가 제안한 MAL 제3조 제1항 개정안
Article 3 – Receipt of written communication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any written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f it is delivered to the addressee personally; if it is delivered at his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or if it is transmitted by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provides a record of transmission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i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or so authorized by the tribunal. If none of these can be found after making a reasonable inquiry, a written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f it is sent to the addressee’s last-known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by registered letter or any other means which provides a record of the attempt to deliver it; (b) the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is so delivered.

스위스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작업반은 해당 안을 바탕으로 전자적 중재 통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모델법 제3조 제1항 (a)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모델법(MAL) 제3조 제1항의 구체적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MAL 제3조 제1항 개정안

Article 3 – Receipt of written communication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 (a) Any written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f it is delivered to the addressee personally; delivered at his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or transmitted by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provides a record of transmission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i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If no such delivery or transmission can be made after making a reasonable inquiry, a written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if it is sent to the addressee's last-known place of business, habitual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by registered letter or any other means which provides a record of the attempt to deliver it;
- (b) The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is so delivered or electronically transmitted.

3) 모델법 개정안의 용어 및 체계 정비

실무작업반은 모델법 제2조 (g)호 및 (i)호의 문구 말미에 부정관사 “a”를 추가하여 각 규정의 끝을 “by means of a data message.”로 수정하였으며, 제35조 제3항에서 첫 번째 “in electronic form”을 삭제하였다. 용어 및 체계 정비가 완료된 모델법(MAL) 개정안 제2조 제(g)항, 제(i)항 및 제35조 제3항의 최종 문언은 다음과 같다.

용어 및 체계 정비 후 MAL 개정안 제2조 제(g)항, 제(i)항 및 제35조 제3항

Article 2. Definitions and rules of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 (g) “Arbitral award” or “award” includes an award in electronic form; an “award in electronic form” means an award made by means of a data message;
- (i)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a party or the arbitral tribunal makes by means of a data message.

Article 35.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3) An award shall not be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4) 모델법 개정안의 명칭

실무작업반은 개정된 모델법의 공식 명칭을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985, with amendments in 2006 and 2026)”으로 확정하였다.

2. UNCITRAL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 개정안

사무국은 UNCITRAL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에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의 판정’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아래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 개정안 (지적 대상 이탈릭 처리)
Arbitral awards have traditionally been made on paper with <i>wet-ink signatures</i>, but they can also be made in electronic form, [Footnote 1] which may offer several advantages, such as enhanced efficiency by enabling faster preparation and delivery of awards, as well as easier distribution, storage and retrieval. The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note, however, that some jurisdictions require arbitral awards be made on paper, <i>in light of the requirements</i> of originality, written form, or signature. Some arbitral institutions retain the practice of making arbitral awards on paper and provide electronic versions only as courtesy copies. Others facilitate arbitral awards made in electronic form, subject to the parties’ agreement. Certain arbitral institutions have an established practice of having the arbitral tribunal make awards only in electronic form,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r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differently. When making the award in electronic form, it is advisabl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nsult the parties beforehand regarding any specific practices or requirements under the applicable law(s), including in jurisdictions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may be sought, such as whether certified copies of the award, or an award with wet-ink signatures, are needed. In determining the form of the award, relevant considerations, alongside the applicable law(s), may include how the form affects the triggering of relevant timelines. Footnote 1: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as amended in [202x] to enhance clarity and legal certainty by making explicit the permissibility of arbitral awards rendered in electronic form and by providing that such awards should not

be [set aside or]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solely because they are in electronic form (see articles 31(5)[, 34 (2-1)] and 35(3)). While the amendments incorpor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revision does not set out criteria by which an award [and notices of arbitration and written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may be considered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paper-based document. Instead, it leaves this matter to domestic laws and practice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해당 초안에 대하여 스위스는 두 번째 문단의 “in light of the requirements” 표현과 관련 하여, “originality”에 대한 언급은 종이 형태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원본성이 결여됨을 의 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in light of their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로, 미국은 “for various reasons”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멕시코는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의 제안이 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어 수용되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첫 문장의 “but”을 “but with modern advances in technology”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는 “wet-ink signatures” 다음에 전자서명 관련 요건에 관한 언급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안들은 모두 수용되었다.

신설안의 각주(footnote) 1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각주의 마지막 두 문장, 즉 모델법 개정 안이 기능적 동등성 인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과 실무 관행 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실무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본문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은 각주를 포함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 이며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삭제를 제안하였다. 작업반은 각주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하였으며, 각주의 내용을 본문 두 번째 문단에 추가하고 각주 자체는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중재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 개정안

Arbitral awards have traditionally been made on paper with wet-ink signatures, but with modern advances in technology they can also be made in electronic form, which may offer several advantages, such as enhanced efficiency by enabling faster preparation and delivery of awards,

as well as easier distribution, storage and retrieval. The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note, however, that some jurisdictions require arbitral awards be made in paper form or may have specific requirements for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Some arbitral institutions retain the practice of making arbitral awards in paper form and provide electronic versions only as courtesy copies. Others facilitate arbitral awards made in electronic form, subject to the parties' agreement. Certain arbitral institutions have an established practice of having the arbitral tribunal make awards only in electronic form,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r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differently. When making the award in electronic form, it is advisabl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nsult the parties beforehand regarding any specific practices or requirements under the applicable law(s), including in jurisdictions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may be sought, such as whether certified copies of the award or an award with wet-ink signatures are needed or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nic signatures. In determining the form of the award, relevant considerations, alongside the applicable law(s), may include how the form affects the triggering of relevant timelines.

1) 신규 제5항

사무국은 신규 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5항
New 5.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ims to enhance clarity and legal certainty by making explicit what the Model Law, as currently formulated, already accommodates, namely the use of arbitral awards in electronic form,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as well as regarding notices of arbitration [and written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It includes amendments to articles 2, [3], 31[, 34] and 35. The revision incorpor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provides that a document should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and drew inspiration from UNCITRAL texts on electronic commerce,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New York, 2005)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The revision does not address criteria, such as accessibility,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by which an award [and notices of arbitration and written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may be considered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paper-based document, and instead leaves the matter to national laws and practice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위 초안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은 첫 번째 문장의 “as currently formulated”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삭제하고 “the Model Law with the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제안은 수용되었다.

독일은 비차별 원칙이 집행 맥락에서만 언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The revision incorpor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라는 문구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비차별 원칙이 이번 모델법 개정안의 핵심적 사안인 만큼 해설노트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논의 끝에 해당 문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스라엘은 신규 제5항과 신규 제7항을 병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과 스위스는 제5항은 원칙을 다루고 제7항은 실무적 협의를 다루고 있어 양자를 병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제5항과 제7항을 분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는 모델법이 비차별 원칙을 선언하더라도 각국의 구체적인 기능적 동등성 기준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5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의견은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신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MAL 해설노트 신규 제5항
New 5.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ims to enhance clarity and legal certainty by making explicit what the Model Law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already accommodated, namely the use of arbitral awards in electronic form,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as well as regarding notices of arbitration [and written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It includes amendments to articles 2, [3], 7, 31 and 35. The revision drew inspiration from UNCITRAL texts on electronic commerce,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New York, 2005)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and incorpor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provides that a document should not be denied validity,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does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laws that may deny an award[, a notice of arbitration, or a communication] validity,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on other grounds, nor is it concerned with or does it predetermine the requirements based upon which validity,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must be accorded. The revision thus does not address the criteria, such as accessibility,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based upon which awards[, notices of arbitration and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may be considered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paper-based document, and instead leaves such matters to the national laws and practice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2) 신규 제6항

사무국은 해설노트(EN) 신규 제5항에 이어 신규 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6항

New 6. Specifically, the amendments to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re as follows:

- * Article 2, subparagraphs (g) to (i): Clarify that the terms “arbitral award” or “award” include an award in electronic form, and relocate to article 2 and amend the definitions of “data messag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from article 7, option 1, paragraph 4.
- * [Article 3, paragraph (1-1) makes clear that delivering notices electronically counts as valid delivery either to an address the party specifically designated or as authorized by the tribunal[, or in the absence of such designation or authorization]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is regularly monitored and actively used by the addressee][to an electronic address regularly us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eir prior dealings.]]
- * Article 31, paragraph 5: Provides that an award may be made in electronic form where the parties agree or, in the absence of agreement, where neither party objects. The sequencing makes it clear that any objection must be raised before the award is made.
- * [Article 34, paragraph (2-1): Clarifies that an award in electronic form shall not be set aside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 * Article 35, paragraph 1: Delete “in writing”, as a drafting clarification, in order to avoid the suggestion that an application to a court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ward must be paper-based.

* Article 35, paragraph 3: Clarifies that an award in electronic form shall not be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위 초안에 대하여 미국은 첫 번째 불릿 항목에 포함된 모델법 제2조 관련 설명과 제7조 관련 설명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명확성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작업반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최종 합의된 모델법(MAL) 제3조 제1항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 제1항에 관한 해설노트 문언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6항 中 제3조 제1항 관련 해설

New 6. Specifically, the amendments to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re as follows:

* Article 3, paragraph 1: Allows that, as revised, a written communication transmitted electronically, with a record of such transmission, to a specifically designated address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was electronically transmitted, whether such address is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y the tribunal.

이에 대하여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수신자에게 주소 지정권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수정 문언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제안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6항 中 제3조 제1항 관련 해설

New 6. Specifically, the amendments to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re as follows:

* Article 3, paragraph 1: As revised, allows a written communication to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if it provides a record of such transmission and is transmitted to an electronic addres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at purpose, usually by the receiving party. Such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was electronically transmitted.

러시아는 미국 측이 제안한 문구 중 “usually”라는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소가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임을 부연하였으며, 논의 끝에 “usually”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업반은 미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모델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해설노트 문언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MAL 해설노트 신규 제6항 中 제3조 제1항 관련 해설
New 6. Specifically, the amendments to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re as follows: * Article 3, paragraph 1: As revised, allows a written communication to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by means that provide a record of such transmission and is transmitted to an electronic addres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usually by the receiving party. Such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was electronically transmitted.

한편, 앞선 논의에서 모델법 제34조에 비차별 원칙 관련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합의에 따라, 해설노트 초안에서도 제34조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되었다. 작업반은 위와 같은 논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신규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MAL 해설노트 신규 제6항
New 6. Specifically, the amendments to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are as follows: * Article 2, subparagraphs (g) to (i): Clarify that the terms “arbitral award” or “award” include an award in electronic form. * Article 3, paragraph 1: As revised, allows a written communication to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by means that provide a record of such transmission and is transmitted to an electronic addres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usually by the receiving party. Such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 the day it was electronically transmitted. * Article 7, option 1, paragraph 4: the definitions of “data messag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have been amended and relocated to article 2. * Article 31, paragraph 5: Provides that an award may be made in electronic form where the parties agree or, in the absence of agreement, where neither party objects. The sequencing makes it clear that any objection must be raised before the award is made. * Article 35, paragraph 3: Clarifies that an award in electronic form shall not be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3) 신규 제7항

사무국은 해설노트(EN) 신규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7항
New 7. These amendments are intended to suppor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electronic form and to enhance efficiency, as awards in electronic form enable faster delivery and more flexible management, including easier distribution, storage, and retrieval of awards and related documents. At the same time, these amendments preserve party autonomy with respect to the form of an award. However, these amendments do not concern jurisdiction-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whether a paper-based award may still be necessary. Accordingly, parties and tribunals should take such requirements into account in their consultations.

프랑스는 실무가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문단 끝에 “some jurisdictions may have specific requirements to consider an award to be in an electronic form”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에 따라 전자 판정문의 승인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는 해당 내용이 이미 신규 제5항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문구 삽입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제7항은 별도의 수정 없이 사무국이 제안한 초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신규 제55항

사무국은 해설노트(EN) 신규 제5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해당안은 실무작업반 내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초안대로 확정되었다.

사무국이 마련한 MAL 해설노트 신규 제55항
New 55. In connec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adopted in [202x], the Commission also adopted, at its [fifty-ninth] session in [202x], a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with respect to arbitral awards in electronic form”. The Recommendation states that the Convention is to be interpreted having regard to the need

to promot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s well as recognizing the need for clarity regard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electronic form. Accordingly, it recommends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be interpret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at arbitral awards are not refus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on the sole ground that they are in electronic form.

III. 분쟁해결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원격 심리절차, 원격 조정 절차에 관한 콜로키엄

1. 중재인과 인공지능(AI) 활용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

1) 중재기관 및 법원의 AI 활용 현황

중재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AAA-ICDR은 건설 분쟁에 특화된 ‘AI 중재인’ 플랫폼을 출시하여 중재 결정 초안을 생성하고 있으며, 생성된 초안에 대하여 인간 중재인의 검토를 거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판정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CIA 등 주요 기구들은 AI를 중재판정부 비서와 유사한 역할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AI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중재인의 ‘행위’와 ‘절차적 책임’에 집중하여 규제하는 ‘행위 기반 접근(conduct-based approach)’을 통해 AI 활용 범위를 관리하고 있다. 세션에 참여한 패널들은 각국 법원 또한 사실관계 요약 및 문서 비교 등에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판결의 최종 주체는 반드시 인간 법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2) AI 활용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및 규범화 동향

전문가 그룹의 지침과 관련하여, CIArb와 SVAMC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감독 원칙을 명시하였다. IBA는 AI 활용을 신호등 체계(Green/Orange/Red)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AI 활용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핵심 원칙 측면에서는 AI 활용 시 중재인의 인지적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중재인의 심증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AI 활용 사실의 공시 여부에 대

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하나, 결정적 증거 분석 등 고위험군 활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 및 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적법절차 원칙 및 판정의 집행 관련 쟁점

권한 위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여 판정을 내리는 행위는 뉴욕협약 및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MAL)상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권한 위임은 판정의 취소 및 집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등 AI를 이용한 증거 조작 및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 방식과 적법절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조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및 원격 조정(Remote Mediation)

1) 조정 절차에서의 AI 기술 도입 현황 및 사례

인공지능(AI) 기술은 기일 지정 및 문서 관리 등 저위험 행정 업무 분야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 등은 AI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여 사건 접수 및 초기 서류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의 경우, 문서상 연대기를 생성하고 당사자 간 이견을 도표화하는 맞춤형 AI 보조 도구를 운용 중이나, 보안 확보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판결 결과 예측 및 확률 분석은 당사자들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합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 조정의 고유 특성과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

조정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하여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가 다음과 같이 식별되었다. 첫째, 조정의 핵심 요소인 비공개 개별면담(Private Caucus) 내용이 AI 학습 데이터로 유출되거나 상대방에게 부적절하게 공개될 리스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계약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둘째, 연구 결과 AI는 문서 요약 등 분석 업무에서는 인간을 앞서기도 하나, 조정의 핵심인 공감(Empathy) 및 문화적 맥락 이해에서는 한계를

보이며, 당사자가 AI의 개입을 인지할 경우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고성능 AI 모델을 보유한 당사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절차적 불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었다.

3) 원격 조정(Remote Mediation)의 실무적 과제

원격 조정은 실무적으로 기술적 및 절차적 통제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 팬데믹 이후 원격 조정이 보편화되었으나, 대면과 원격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 시 대면 참석자 위주로 집중하게 되는 등 심리적인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었다. 원격 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배경으로는 원격 환경에서의 무단 녹음 방지, 조정인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상 격리 공간인 보안 소회의실(Breakout room)의 활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집중도 유지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의 배치 등이 제시되었다.

4) 법적 쟁점 및 규범화 방향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AI 보조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상 ‘조정 결과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정인의 확인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원격 조정에서 체결된 합의문의 전자서명이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3. 중재에서의 원격 심리(Remote Hearings): 절차 지침 및 모범 사례

1) 적법절차 원칙 및 형평성 확보

원격 심리 시행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와 당사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인프라 접근성, 시간대 차이, 기술적 숙련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기대등의 원칙(Equality of Arms)’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저개발국 당사자들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실무적 장벽으로 지적되었다. 심리 방식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신문 시 물리적 현장감 결여에 따른 신빙성 평가의 어려움이 언급되었으며, 장시간의 모니터 주시에 따른 집중력 저하 및 화상회의 피로(Zoom Fatigue) 등 인적

한계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화상회의 피로란 온라인으로 장시간 진행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한계 및 집중력 저하 현상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적법절차 침해가 명백하거나 증인의 신빙성 확인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인 경우와 같이 원격 심리가 부적절한 상황(Red Lines)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증인 및 전문가 심리의 무결성 확보 방안

증인 및 전문가 심리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지침이 제시되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확한 메시지 전달이나 증인 코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60도 실내 점검(Room Sweeps), 가상 배경 사용 금지, 증인 감독관(Proctor) 파견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하드웨어 부품, 화학 샘플, 암석 등 실물 증거의 질감이나 무게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건설 및 제조 분야의 분쟁에서는 원격 심리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하이브리드(Hybrid) 및 기술적 쟁점

대면과 원격 방식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운영 및 기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재판정부와 일부 당사자만 현장에 출석하고 상대방은 원격으로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심리의 경우, 대면 참석자가 향유하는 심리적 우위와 이로 인한 중재판정부의 잠재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강조되었다. 기술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통신 두절 등 기술적 결함 발생 시의 대응 절차를 사전에 합의하고, 최소한의 기술 표준 및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으로 정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중재에서의 원격 심리 관련 규범화 필요성 여부

원격 심리의 규범화 필요성에 관하여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다. 규범화에 찬성하는 측은 Ad-hoc 중재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UNCITRAL 차원의 비구속적 모범 사례 또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은 현행 시스템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집행 거절 사유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규범

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IV. 향후 논의 방향

1. 전자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이번 회기를 통해 전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국제상사중재 모델법(MAL) 개정안, 모델법 해설노트(EN), 중재 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Note 21) 및 뉴욕협약 해석에 관한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며, 뉴욕협약 해석에 관한 권고안의 경우 지난 제82차 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최종 합의된 국제상사중재 모델법(MAL) 개정안과 모델법 해설노트(EN) 추가 문안, 중재 절차 조직화에 관한 노트(Note 21) 및 뉴욕협약 해석에 관한 권고안은 2026년 제59차 UNCITRAL 본회의(Commission)에 제출될 예정이며, 동 본회의에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채택이 완료될 예정이다.

2. 분쟁해결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 등에 관한 콜로키엄 관련

실무작업반은 인공지능(AI) 및 원격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급한 규범화 단계에 진입하기보다는, 사무국 차원에서 관련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작업반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분쟁 해결 관련 기구인 iGLIP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AI 기반 판정의 법적 효력 및 뉴욕협약상 AI 기반 판정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금번 콜로키움에서 식별된 책임 소재, 인간의 감독 원칙, 투명성 등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 범위(Mandate)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V. 관찰 및 평가

대한민국은 이번 제2실무작업반의 핵심 의제인 ‘전자적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일본,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과 공동으로 제안한 주도국으로서, 전자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전방위적으로 선도하였다. 특히 이번 제83차 회의에서는 한국 대표단 소속인 이혜민 교수가 보고관(rapporteur)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우리 대표단이 해당 논의의 개시 단계부터 최종 성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현행 국내 중재법은 전자적 형태의 중재 판정 및 통지를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규범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모델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내 중재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실무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차기 제2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질 새로운 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규범 형성 논의를 주도하는 UNCITRAL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